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24호 2016. 9. 28.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공기업 ·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김재환(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2016. 9. 2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9. 3.
초고 작성기간	2016. 9. 4. ~ 2016. 9. 17.
초안 검토	재정경제팀 김대은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2시 - 실무위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김대은, 임동춘, 김봉주, 이수기 팀장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6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발 간 사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또는 수년간에 걸친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수행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여 정부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언급된 사항들 중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선노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성 호

요 약

- 2015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채택하였음
 -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영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평가단의 관리가 중요함
 - 동 질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경영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는 등 공정한 평가의 수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음
 -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규 평가위원은 기관특성과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실제 평가에 집중하기 어려움에도 매년 40~80% 수준으로 경영평가위원이 교체되고 있음
-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평가위원 선임 시에는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해당 평가위원 후보자가 일정기준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고,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해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윤리검증을 실시하며,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및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위원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하였음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평가단 관리방안은 2010년 3월 제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가 2016년도 경영평가위원 선임 시부터는 경영평가위원의 용역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위원의 평가활동 종료 후에는 사후에 해당 경영평가위원의 활동을 평가한 후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임
- 그러나 금번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방침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연구용역 수주 등을 금지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내부지침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 등을 제한해왔음에도, 해당 내부지침 등을 위반하는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및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설정한 연구용역 등의 수주제한 기준(1억원 이상)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
- 또한, 평가위원의 교육이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한 당일 오후 몇 시간에 한정되어 사전에 평가위원이 경영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영평가를 위하여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의 총괄반(단장·부단장·간사로 구성)이 평가위원의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주한 평가위원을 경영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과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평가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경영평가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주하는 사례를 막아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참여인원과 외부강사, 세미나 참석인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평가위원이 연구용역 수주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평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평가위원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둘째, 신·구 평가위원간 적절한 교체를 통하여 평가위원 개인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역량을 축적하고 평가의 일관성 확보 및 공공기관의 사전 로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와 더불어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공공기관별 업무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경영평가단에 참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경영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적인 평가교육지침을 개발하여 평가위원 간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평가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경영평가단은 정부의 평가위원 검증기준과는 차별화된 윤리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검증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차 례

□ 요약

I. 평가 배경 / 1

- 1. 배경 1
- 2. 관련 법령 및 제도 3

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 7

-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7
-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8

I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 10

-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10
-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1
 - 가.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등 11
 - 나.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및 사후평가 12
 - 다.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 윤리검증 실시 14

IV. 개선방향 / 15

- 1. 경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15
- 2.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17
- 3.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및 사후평가 철저 등 23

☐ 참고문헌

☐ 부록

1.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28

표 차례

[표 1] 2009년~2013년 경영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현황	2
[표 2]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
[표 3]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8
[표 4] 경영평가단 워크숍 주요내용	13
[표 5] 경영평가단 교체율 추이	17
[표 6] 2014년 평가위원 중 지난 3년간 평가경험이 있는 위원 수	18
[표 7] 경영평가단 직업구성의 변화	22
[표 8] 경영평가단 전공별 구성의 변화(대학교수 기준)	22

I. 평가 배경

1. 배경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함)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임
-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도로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자에게 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기부여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함)을 구성·운영 중임
-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이에 따라 경영평가위원이 특정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는 등 공정한 평가의 수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남

[표 1] 2009년~2013년 경영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위원 수	연구용역 건수
① 최근 5년간 경영평가에 참여한 경영평가 위원	449	
② 최근 5년간 경영평가위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우	117	272
③ 경영평가 참여 전후 1년간((n-1)년부터 (n+1)년까지)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우	80	137
④ 평가에 참여한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우	35	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4.11.

- 경영평가에 있어 평가단 구성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전문성이 담보되는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하며,
- 그 구성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지표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¹⁾
 - ◆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규 평가위원은 기관특성과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실제 평가에 집중하

1) 라영재·윤태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2.

기 어려움에도 매년 40~80% 수준으로 경영평가위원이 교체되고 있음

- ◆ 평가단의 대부분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들 중 대부분이 행정학·경제학·경영학 분야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학문에 대한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경영평가의 평가위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및 2015년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시정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경영평가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음

2. 관련 법령 및 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새로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경영평가제도를 통합관리하게 되었음
-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제5절에 명시되어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기관장의 경영목표 수립 및 경영실적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음
- 경영평가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④ (생략)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동일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 ⑥ (생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5조(평가단장, 평가부단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① ~ ⑥ (생략)

⑦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안 사항 등) ① (생략)

②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유지 등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별첨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평가단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각서
2. 윤리 서약서
3. 상피제 서약서
4. 연구용역 신고서
5. 이력서 카드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 각서, 윤리 서약서, 상피제 서약서²⁾, 연구용역 신고서, 이력서 카드 등을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단구성, 세부평가계획, 평가단 실사, 검토 및 조정, 평가완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평가단은 총괄반, 계량반 및 비계량반으로 구성됨³⁾

2) 경영평가위원의 최근 개인활동이 특정 기관과 관련이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판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것

3) 공공기관경영연구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

- ① 총괄반의 업무는 경영평가단 업무 종합, 조정 담당이며, 단장, 부단장, 간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② 계량반은 유형별 계량지표 평가를 담당하고,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학 전공 대학교수로 구성되고 있으며, ③ 비계량반은 유형별 비계량지표 평가를 담당하며, 교수 등 피평가기관의 업무를 숙지하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음

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 9월 14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 관한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그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 업무검증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경영평가는 임직원의 보수 및 기관장의 해임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한 것임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평가대상기관 연구용역 수주 문제는 2011년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감사원도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관리 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음

[표 2]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관리방안 마련 - 경영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 업무검증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5.12.

-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
- 일시: 2015년 9월 14일
- 기획재정부회의실, ○○○의원, ○○○의원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해당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책정의 근거가 되고 기관장의 인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이에 따라 경영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 중 일부는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평가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임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으며, 일부 평가위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2년동안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례도 있음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경영평가 활동기간 뿐만 아니라 평가활동 전후로 일정기간 연구용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국회의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관리 강화방안 마련 요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2016년도 평가위원 선임 시에는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 수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고,
-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해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윤리검증을 실시하며,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및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위원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표 3]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관리방안 마련	○ 경영평가단 관리방안 마련 - '16년도 평가위원 선임 시,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경영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 주제한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 업 무검증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 련할 것	-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 수주한 경우, 평 가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해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 윤 리검증 실시 - 평가위원 사전 교육 강화(초임 위원은 별도의 추가 교육 실시) -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평가 결과를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평가단 관리방안은 2010년 3월 제정한 「공공기
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
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후보
자 명부에서 제외시키고,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경영평
가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책
임경영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가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은 2016년도 경영평가위원 선임 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음
- 첫째, 정부는 평가위원이 2015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해 최근 5년(2011년~2015년) 동안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사외이사 참여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평가단장 중심의 윤리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해당 기준을 준거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에 손상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음
- 둘째, 정부는 그간 평가위원들이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인선을 다소 앞당긴 바 있음(2015년의 경우: 3월2일 위촉 → 2016년의 경우: 2월 21일 위촉)⁴⁾
- 셋째, 정부는 평가위원들이 경영평가의 운영시스템, 평가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2016.2.21.)하여 경영평가단의 총괄반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경영평가위원의 위촉을 예년에 비하여 한 달 가량 앞당길 계획이었으나, 평가위원의 선정 및 검증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등

□ 첫째, 정부가 2016년도 경영평가위원 선임 시부터는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내부규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순수하게 경영평가활동 기간(3개월)만 용역수주를 제한하고 있어 경영평가위원과 공공기관간의 유착관계를 막으려는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적었음⁵⁾

- 이에 그동안 상당수의 경영평가위원들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는 등 공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어 왔음

□ 다만, 금번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방침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내부지침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등을 제한해왔음에도, 내부지침 등을 위반하는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⁶⁾하였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연구용역 수주 등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

5)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단장, 평가부단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⑦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 2011년 감사원의 지적 및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및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등의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설정한 연구용역 등의 수주제한 기준(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어, 해당 기준으로는 경영평가위원과 공공기관간의 우호적 관계를 제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나.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및 사후평가

- 정부는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위원의 평가활동 종료 후에는 사후에 해당 경영평가위원의 활동을 평가한 후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사전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 기회도 부족한 상황인데, 평가경험이 없는 평가위원들이 기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기관실사를 수행하여 경영평가 수검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한 바 있음⁷⁾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2014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결과 보고서」(2015.1.)에서도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은 경영평가단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점수에 비해 낮은 반면, 그 중요도는 높아 최우선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지적된 바 있음

7) 김주찬 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조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7.

- 다만, 평가위원의 교육이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한 당일 오후 3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이 경영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영평가를 위하여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의 총괄반(단장·부단장·간사로 구성)이 평가위원의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음

[표 4] 경영평가단 워크숍 주요내용

제 1 부	경영평가단 위촉장 수여
13:30~13:40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인사말
13:40~13:45	경영평가단 위촉장 수여 (단장, 부단장)
13:45~13:55	반장식 경영평가단장 인사말
제 2 부	경영평가단 전체 오리엔테이션
14:00~14:30	경영평가제도 소개 및 평가단 유의사항
	· 경영평가제도 및 경영평가단 운영시스템
	· 2016년 경영평가단 유의사항 및 윤리강령
14:30~15:00	공공기관 핵심정책 정책방향(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제 3 부	경영평가단 부문별 회의
15:20~17:20	· (경영관리 계량)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착안사항
	·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 유의사항, 평가 착안사항별 가중치 논의 등
	·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착안사항
	· (기관장평가팀) 기관장평가 방안 논의
	· (감사평가팀) 감사평가 방안 논의
	· (지표설계팀) 향후 지표 검토 방안 논의
제 4 부	경영평가단 팀별 회의
17:30~18:30	· 팀별 역할분담 및 일정 논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송언석 2차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참석-평가위원 165명 위촉, 6월말 평가결과 발표」, 2016.2.21.

- 또한, 정부는 2016.6.16.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발표⁸⁾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사후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평가위원의 사후평가 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있음

다.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 윤리검증 실시

- 경영평가단도 정부의 용역 수주제한 방침과 별개로 평가단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윤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은 경영평가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경영평가단의 자체적인 윤리검증 기준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정부의 용역 수주제한 방침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검증에 불과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위원의 비윤리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용역 수주제한 방침은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일정기준 이상 수주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적극 추진으로 실적 향상」, 2016.6.16.

IV. 개선방향

1. 경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책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예산책정에 있어 주요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평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적 활동에 비추어 해당기관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상피제 서약서, 연구용역신고서, 최근 5년 이내 공공프로젝트 또는 연구용역 참여내용 및 위원회·자문활동 경력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이력서 카드 등을 제출받아 적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대상 기관을 결정하고 있음
- 또한, 2010. 3. 제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임되기 3년 이내에 또는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해당 연도에 관련 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음⁹⁾

9) 감사원에서는 2007년~2010년까지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사례를 조사하여 부적

- 이처럼 평가위원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참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연구용역 등에 대해 별도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평가위원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기 때문임
- 따라서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주하는 사례를 막아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참여인원과 외부강사, 세미나 참석인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해당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전체적인 연구용역 현황이나 작성자 등도 별도 카테고리 관리함으로써 특정 연구자의 공공기관 연구용역 현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평가위원이 연구용역 수주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평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평가위원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제재수단으로 단순히 “경영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단순히 평가위원을 사퇴하기만 하면 되므로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

절한 사례를 발견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9년~2013년까지의 평가위원 연구용역 수주 사례를 조사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발견하였음

부록 1.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연구용역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및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설정한 연구용역 등의 수주제한 기준(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 현재 경영평가단은 비상설기구로서 해당 연도의 평가가 종료되면 경영평가단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평가위원 개인 및 경영평가단의 평가역량 축적이 어려운 실정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원은 연간 150~160명 수준인데, 매년 경영평가단의 신규인원 비율은 40~80% 수준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156명의 평가단 중 122명이 신규로 평가에 참여하여 신규인원 비율이 78%에 달한 적도 있음

[표 5] 경영평가단 교체율 추이

(단위 : 명, %)

연 도	총 원(A)	전년도 참여자(B)	전년도 비참여자(C)	교체율(=C/A)
2012	149	100	49	33

연 도	총 원(A)	전년도 참여자(B)	전년도 비참여자(C)	교체율(=C/A)
2013	159	96	63	40
2014	156	34	122	78
2015	162	74	88	54
2016	161	102	59	37

자료: 기획재정부(2016),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 경영평가단을 대규모로 교체한 2014년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156명 중 이전 3년(2011~2013년)동안 경영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위원 수는 50명으로 32.1%에 불과함
- ◆ 개별 기관 평가항목별로 보면 공기업 I의 ‘경영효율성 향상’ 항목과 ‘리더십/책임경영’ 항목, 기금관리형의 ‘주요사업’ 항목과 위탁집행1 유형의 ‘리더십/책임경영’ 항목, ‘노사복리후생’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에 이전 3년간 평가경험이 있는 위원이 한명도 없었던 경우도 있었음¹⁰⁾

[표 6] 2014년 평가위원 중 지난 3년간 평가경험이 있는 위원 수

(단위: 명)

기관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평가위원 수	이전 3년(2011~2013년)간 평가경험 있는 위원 수
공기업 I	경영효율성 향상	3	0
	리더십·책임경영	3	0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5	4
	주요사업	6	3

10)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4.11.

기관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평가위원 수	이전 3년(2011~2013년)간 평가경험 있는 위원 수
공기업 II	경영효율성 향상	6	3
	리더십/책임경영	6	2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8	2
	주요사업	9	2
기금관리형	경영효율성	3	1
	리더십/책임경영	3	2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4	4
	주요사업	7	0
위탁집행1	경영효율성 향상	3	1
	리더십/책임경영	4	0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4	2
	주요사업	6	1
위탁집행2	경영효율성 향상	3	1
	리더십/책임경영	3	1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2	2
	주요사업	4	2
강소형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15	5
	주요사업	14	1
노사복리후생		11	0
평가지표 설계		18	7
기타(단장·부단장·부문간사)		6	1
합 계		156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4.11.

- 평가위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구 평가위원 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신·구 평가위원 교체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단의 교체와 관련하여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최근 5년간의 경영평가단 교체율을 살펴보면 최저 33%에서 최대 78%에 달하는 등 비일관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경영평가단 교체비율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사전에 경영평가단 교체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전로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평가위원이 새로운 시각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함으로써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음
 - ◆ 그러나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이 과도하게 변경되면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모호해질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기준의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8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매년 3월 20일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후인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기관의 현안 및 세부평가 지표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모순 또는 불일치 사례 여부에 대해 검증·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임기제 도입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¹¹⁾되고 있는바, 임기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임기제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의 임기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개인 및 경영평가단의 평가역량 축적뿐만 아니라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음¹²⁾
- 그러나 평가위원의 임기제는 평가위원이 공공기관의 로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평가위원의 임기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평가제도 변화에 따른 평가단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어렵게 하여 평가단 관리가 지나치게 경직적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음
 - ◆ 평가위원의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임기제의 도입 범위를 평가위원 전체로 할 것인지 또는 지표개선팀 등 일부에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나 평가위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각의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수행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등 공통된 평가지표 외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주요사업 관련 지표를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관련 지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금융·건설·제조·검사·검정·환경·고용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11) 국회예산정책처(2014), 이오·유승현(2010) 등은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임기제 도입을 주장

12) 이오·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08년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연구원, 2010.2.

-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영평가단은 대부분 경제 · 경영 · 회계 및 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관련 지표에 대하여 각 공공기관별 업무특성 및 목적에 맞는 업무활동 수행 여부 등의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

[표 7] 경영평가단 직업구성의 변화

(단위 : 명, %)

연 도	직 업				총 계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기타	
2012	101	28	12	8	149
2013	109	31	9	10	159
2014	100	31	12	13	156
2015	111	31	8	12	162
2016	103	29	10	19	161

자료: 기획재정부(2016),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표 8] 경영평가단 전공별 구성의 변화(대학교수 기준)

(단위 : 명, %)

연 도	전 공						총 계
	경영/경제학	회계학	행정학	공학	법학	기타	
2012	35	21	31	4	3	7	101
2013	43	16	33	9	2	6	109
2014	38	18	31	6	5	2	100
2015	40	13	42	8	4	3	110
2016	37	9	43	8	3	3	103

자료: 기획재정부(2016),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 이로 인해 계량지표의 평가에 있어서는 개별 평가기준별 실적의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비계량지표 평가에서는 평가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제시 보다는 문제점 제기에 따른 피상적인 개선의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¹³⁾
- 그러므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공공기관별 업무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경영평가단에 참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⁴⁾¹⁵⁾

3.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및 사후평가 철저 등

-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밝힌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및 사후평가 철저 등에 대한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기관의 현안 및 세부평가지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여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실제 경영평가를 하기에 앞서 평가위원이 경영평가제도 및 피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13) 김주찬 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조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7.
 - 1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2011.6.
 - 15)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방안제시가 미흡하므로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담 평가위원을 별도로 선임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조언을 수시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음

- 현재는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총괄반¹⁶⁾이 평가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한 당일 오후 몇 시간에 한정되어 있어 평가위원회에 대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경영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적인 평가교육지침을 개발하여 평가위원간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둘째,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 경영평가의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위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근거로 경영평가단 구성 시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경영평가단 스스로의 윤리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평가위원 검증기준과는 다른 윤리검증 기준을 두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검증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경영평가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해당 연도의 평가가 종료되면 경영평가단도 자연스럽게 해체됨에 따라 매년 단장, 부단장, 간사는 새롭게 구성됨

- 경영평가단이 정부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위원을 평가할 경우에는 중복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음
-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경영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외부인에 비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영평가단 스스로 자체적인 윤리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가단의 윤리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2011.6.
- 공공기관경영연구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 12.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4.1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송언석 2차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참석-평가위원 165명 위촉, 6월말 평가결과 발표」, 2016.2.2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적극 추진으로 실적 향상」, 2016.6.16.
- 김주찬 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조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7.
-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기획재정부 등 소관)」, 2016.4.
- 라영재·윤태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2.
- 이오·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08년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2.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4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5.1.
- 한국정책과학학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향」, 2010.12.

감사원(<https://www.bai.go.kr>)

국회국감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main.do>)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기획재정부(www.mosf.go.kr)

[부록 1]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금액단위: 천 원)

평가 위원	해당분야 참가연도	참여용역 등 현황		
		기관명	내 용	금액
□□	'07 ~'10	A	· '07. 7월 ○○○ 중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	62,000
		B	· '08. 7월 정부○○ 및 타 기관 사례(강의)	2,000
		C	· '09. 7월 변화의 시대 ○○○○전략(강의)	1,046
○○	'09 ~'10	D	· '09. 3월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관련 연구(용역) * 6명 공동 연구	88,000
◇◇	'07 ~'10	E	· '10. 5월 공공기관의 새로운 ○○○○와 ○○○○ 방안 (강의)	1,000
		F	· '07. 12월 ○○○○ 등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 부문별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28,000
▽▽	'10	G	· '08~'10 ○○○○교수, 서비스○○○(강의)	24,800
		H	· '09. 2월 '08년 변형된 ○○○○ 이해(강의)	1,000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201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2016.9.7.	김 여 라
제2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2016.9.7.	정준화 송시현
제3호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6.9.7.	정도영
제4호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2016.9.7.	조 규 범
제5호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2016.9.7.	심우민
제6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6.9.8.	최병근
제7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2016.9.8.	이동영
제8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2016.9.8.	조숙희
제9호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9.8.	배재현
제10호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2016.9.8.	조주은
제11호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016.9.12.	조인식
제12호	지방공기업 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2016.9.12.	류영아
제13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2016.9.12.	이승열
제14호	재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	2016.9.12.	김종갑 임채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2016.9.12.	전 형 진
제16호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6.9.22.	강 지 원
제17호	건강영향조사의 개선 방안	2016.9.22.	이 혜 경
제18호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현황과 개선방향	2016.9.22.	장 영 주
제19호	정부의 소득분배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6.9.22.	김 민 창
제20호	낙도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2016.9.22.	강 재 구
제21호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2016.9.22.	정 미 야
제22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2016.9.28.	정 재 환
제23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2016.9.28.	임 언 선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24호

발 간 일 2016년 9월 28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7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489-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NARS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내역을
점검·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국정감사 이전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대)
www.nars.go.kr